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32820 판결 [구상금등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주경진

변론 종결 2019. 6. 28.

판결 선고 2019. 8. 16.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단5014249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관하여 2016.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67,395,7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3,697,8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44,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6. 6. 2. A에 대한 소매금융일반자금 대출금 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대출기한을 2017. 5.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A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8. 31. 접수 제109221호로 '2016. 8. 2.자 매매'를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또는 피고들'과 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2016. 11. 3. A에 대하여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자, E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11. 23. E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44,292,861원(= 원금 144,000,000원 + 이자 292,8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A으로부터 1,417,140원을 회수하였다.

마. 제1심 변론종결 무렵인 2018. 3. 16. 현재 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A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67,395,770원(=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144,292,861원 -회수금 1,417,140원 + 대지급금 954,953원 + 2018. 3. 1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액 23,565,096원)이다(이하 원고의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으로는 가액반환만이 가능한데, 그 가액반환의 범위는 제1심 변론종결 무렵인 2018. 3. 16. 현재 167,395,770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들과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의 1/2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1 내지 6, 37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12. 30.에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등기권리증에 등기원인서류로 첨부된 2016. 8. 2.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들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다시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석재를 건축물에 고정시키는 앙카, 볼트, 너트, 석재공구 등을 공사 현장에 납품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석공공사업, 조경물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에게

양카, 볼트 등을 납품하여 왔다.

2) 피고 C은 위와 같은 자재 납품을 계기로 하여 A의 대표이사 B을 알게 되었는데, 2012. 1.

초경부터 B의 제안으로 A에게 단기 운영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

3) A은 2015. 6.경 김포시 H 소재 건물에 지점을 별도로 설치하였는데, B은 피고C에게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무실을 김포쪽으로 이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4) 피고 C이 이에 응함에 따라 A은 2015. 12. 30.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100,000,000원(= 계약금 110,000,000원 + 잔금9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은 피고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위 2)항의 자금 대여로 인하여 피고 C이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원리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피고 C이 2016. 7.말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5) 위 합의 당시 A과 피고 C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F의 사무실에서 그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다(증인 F의 증언 참조).

6) A과 피고 C은 2016. 8. 2.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을 매수인으로 추가하였고, 위와 같이 다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대금 액수, 근저당권 채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 등 주요 사항은 위 합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보건대, 2016. 11. 3. A에 대하여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자, E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11. 23. E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44,292,86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지만(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참조), 다른 한편 갑 제1, 2,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대위 취득을 위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7. 7. 24. A에게 신용보증원금을 170,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08. 7.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E은 2007. 7. 25.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에게 200,000,000원 상당의 소매금융일반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

2)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조건은 매년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신용보증원금이 144,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이 2016. 6. 3.까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E의 A에 대한 대출 역시 대출금액 및 대출기한이 변경되었다.

3) 위 2)항의 최종 신용보증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위와 같은 조건 변경 방식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연장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16. 6. 1.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44,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E은 2016. 6. 2. 위와 같이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기한을 2017. 5. 31.까지로 연장하였다(위 기초사실 참조).

라.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에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대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7,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 32 내지 36, 41, 42,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은 여러 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 조경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었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당좌부도의 발생을 예견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A에게 계속하여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 C 역시 A과 사이에 금전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들은 2015. 8. 29.경 A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A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4) A은 I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진천군 소재 J 건설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위 회사가 2016. 9.경 약 400,000,000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A은 2016. 10.경부터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그 자금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여 결국 2016. 11. 3. 당좌부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대위 취득을 위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까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C과 A 사이의 금전 거래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A의 영업 상황 및 당좌부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이의석, 판사 이준현

## 별지

## 목    록

1. 서울 영등포구 K 대 129㎡

2. 서울 영등포구 K

[도로명 주소] 서울 영등포구 L

위 지상 벽돌조 및 철골판넬구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92.65㎡

2층 64.38㎡

3층 32.94㎡

지층 16.44㎡, 끝.

1) 원고가 제출한 2018. 3. 1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참조. 원고의 항소장 기재 중 항소취지는 오기로 보인다.